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5월 31일

나. 발 의 자: 이성수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4.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내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 운영방안과 구 소유 공유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4조)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내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 운영방안과 구 소유 공유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에서는 제1항에제4호를 신설하여 활성화계획 수립 시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내 화재예방과 안전 관리 운영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구 소유의 공유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 결과

-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2019년 전국적으로 약 9만 대에서 2023년 54만 대로 전기차 보급이 약 6배 이상 증가하게 됨.
- 또한 소방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사건도 2021년 24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발생이 운행 중뿐만 아니라 주차·충전 중에도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사전적인 화재대비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운영방안과 우리 구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2
----------	-----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이성수, 이순우, 유승용
최봉희 의원(4인)

1. 제안이유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내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 관리 운영방안과 구 소유 공유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4조)

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안 제5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6. 4. ~ 6. 8.)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급촉진”을 “보급 촉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필요한”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 내 화재예방과 안전 관리운영 방안

제5조제1항 중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전용주차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덜고”를 “줄이고”로, “행정적·재정적”을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설치·운영”을 “보급·확대 사업”으로, “한다)할”을 “한다)를 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

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3조제1항의 공유재산 심의회”를 “제3조제1항에 따른 영등포구공유재산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 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이”를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 비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로, “따르되”를 “따르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하는 자”를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u>보급촉진</u>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보급 촉진</u>----- ----- ----- ----- ----- -----.</p>
<p>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u>보급을 촉진</u>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4. (생략)</p>	<p>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 ----- ----- ----- <u>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u>----- ----- ----- -----.</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 내 화재예방과 안전 관리운영 방안</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6. -----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③ -----
----- 관련 분야 -----

-----.

제5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

----- 전용주차구역 -----

-----.

② -----

----- 줄이고 -----
-----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
-----.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

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
로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
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
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
라 한다)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
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
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제1
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
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
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
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④ ----- 보급·
확대 사업-----

-- 한다)를 할 --.

⑤ ----- 제4항-----

----- 제3조제1
항에 따른 영등포구공유재산심
의회 -----
-----.

⑥ 제4항-----

있다.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과 이용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
3. 4. (생략)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 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생략)

제9조(홍보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

----- 각 호의 사항을
-----.

1. (현행과 같음)
2. 구 -----

3. 4. (현행과 같음)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 따르
되, -----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개인 또는 단체

다.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